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0년 4월 1일

나. 발 의 자: 고기관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0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기관 의원)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구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5조)
-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조치 규정(안 제10조~제16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7조~제19조)

-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1조)
-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 손실보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 환자가 지역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격리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을, 안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는 의료인의 권리와 그에 따른 의무를, 안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피해보상 등 국민의 권리와 감염병 발생 시 협조해야 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며,
 - 안 제6조 ~ 안 제11조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역학조사, 관리기관 지정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 안 제19조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관리 및 그 방법에 관하여 사안별로 규정하였음.
 - 안 제20조 ~ 안 제21조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임명에 대한 사항을, 안 제22조는 교육, 홍보, 캠페인 등 국민에 대한 홍보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23조 ~ 제28조는 민간의료인력·기관 등에 대한 경비 및 시설지원,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과정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필요

성과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및 관리 방안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시의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일

발 의 자 : 고기판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 ~ 제5조)

나.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 제6조)

다.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 ~ 제16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 ~ 제19조)

마. 방역관, 역학조사관 임명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0조 ~ 21조)

바. 교육 및 홍보 (안 제 22조)

사. 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시설지원, 손실보상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 23조 ~ 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2020.4.9.~4.13.)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동자울방역단”이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별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

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구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구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역학조사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기예방접종)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① 구청장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제13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소독 의무 및 권고) ①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소독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동자율방역단 등으로 하여금 소독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0조(방역관)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역학조사관) 구청장은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역학조사관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2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영등포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의료인력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손실보상) ①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다.

제2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7조(정보제공요청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이조에서 “경찰관서”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표창 등)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21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